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-6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자치구 조례가 위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, 관련조항을 수정·보완하고 영업규제에 관한 처분사항을 사전 통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함으로써 입법상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상생발전을 지속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무일에 관한 내용 및 절차 개정(안 제14조의2제1항)

- 1)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을 제한하고 지정한다에서 명할 수 있다로 개정
- 2)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개정(제1항제1호)
- 3) 의무휴업일수는 월 2회로, 지정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에서 의무휴업일은 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개정(제1항제2호)
- 4)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수 지정은 공고하여야 함(제3항 신설)

나. 조건등의 부과 시 이의신청 등 절차 신설(안 제15조제3항 신설)

3. 조례안 : 따로붙임

가.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.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
4. 주요토의과제

“없음”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대형유통기업에 대한 규제사항임.

마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12. 7. 12. ~ 2012. 8. 1.

- 제출 의견 : 1건 접수(주식회사 이마트 공덕점)

- 의견 내용 : 쇼핑추구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등 법률적 침해, 입점임대업주의 매출감소 등 정책적 이해관계자의 피해 주장

- 검토 결과 : 미반영

- 미반영사유 : 법률적 침해에 관하여는 헌법소원이나 법률개정사항으로 본 조례에 반영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

2)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자율평가 검토결과 : 의견 있음

- 검토근거 : 국민권익위원회 2011 부패영향평가 강남구 사례 인용

- 검토사유 : 조례 제15조(조건 등의 부과)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의 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과 처리절차가 없어 과도한 부담의 해소 또는 경감 등이 어려움

- 검토결과 : 제15조에 제3항 신설

- 반영사유 : 조건 등의 부과에 대한 후속 행정절차 미비로 예측 가능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

3)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검토결과 : 이상 없음

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 : (2012. 8. 14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 중 “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것”을 “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7조의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”으로 하고, “영업시간을 제한하고,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.”를 “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.”로 하며, “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.”를 “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오전 8시까지로 한다.”를 “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의무휴업일”을 “의무휴업일 지정”으로 하고 “월 2회로 하고,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휴업일로 한다.”를 “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.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구청장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회를 소집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15조(조건 등의 부과) ①~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5조(조건 등의 부과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의회를 소집 심의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